

독일의 재정조정제도 -지원하되, 균등하지는 않도록



강주영

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kijrecht@daum.net

독일의 재정조정제도

독일에서는 각 연방주(Land,)가 (州,)의 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. 이 제도는 (Finanzausgleich)로 불리며, 연방주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

재정조정 체계

독일의 재정조정 체계는 ()로 구성되어 있다. 이 체계는 연방주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 () 4

제1단계: 수직적 재정조정

1 () (州)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 () 1

1 ()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 () 106 1

2 ()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 () 2 ()

)
 . 106 3
 (Einkommensteuer)
 (Körperschaftsteuer) 가 (Um-
 satzsteuer) 가
 . 가
 , 가 가
 .

제2단계: 수평적 재정조정

(州)
 , 1
 .
 가
 ().

제3단계: 주(州) 간의 재정조정

107 2 , “ ...
 (angemessen) ... ”
 , 104b “
 (angemessen) ”
 .
 (Ausgleichszuweisungen)
 (主權)

제4단계: 연방보충교부금

(Bundesergänzungszuweisungen)
 3

독일재정조정제도의 지향점

재정조정기준법 제9조 (재정조정 수준)

적절한 조정(Der angemessene Ausgleich)은, 주(州)가 주
 고유의 업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정력에 이르는 정도를
 말한다. 이는 주의 주권 및 연방국가의 연대적 공동체로의
 결속이 배려될 때 도달된다. 그러나 재정조정 시 급부의무
 를 지는 주들의 급부능력이 결정적으로 저하되거나 각 주
 의 재정력이 평준화 되어서는 안 된다. 각 주 간의 재정조
 정은, 각 주 간에 존재하는 재정력 격차를 제거해서도, 또
 각 주간 재정력 순위를 변경시켜서도 안 된다.

107 2 , “ ...
 (angemessen) ... ”
 , 104b “
 (angemessen) ”
 .

104b 107 2

가 (州)

,
 가

가

